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11호 2023. 5. 10.(수)

조 례

제5379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2
제5380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9
제5381호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20
제5382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	22
제5383호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23
제5384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5385호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5386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5387호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알 림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2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231호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6

조 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79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태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 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경상남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지급 증빙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의회의장 귀하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의회위원장 귀하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되, 최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 신청서 ○ 소가증명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형사소송	○ 수사단계, 형사재판	○ 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	○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타	○ 가치분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용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입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료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0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상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현지 규범과 관습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2.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최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등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등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국외공무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목적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 지	도착 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유의사항》

- 1) 작성기한 : 귀국 후 30일 이내
- 2) 작성내용
 - 출장목적과 무관한 출장지에 관한 일반적 관광정보 등은 기재 엄금
 - 출장국가·도시의 기본 현황자료(예시: 지형, 기후, 역사, 국기 등)는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여 기재
 - 안내책자, 인터넷 수록 내용을 단순히 인용하는 사례 지양
 - 출장 중 견학·시찰·행사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 의원별 활동내역 및 질의응답 내용이 나타나도록 작성
 - 방문 기관 현황 및 정책 현장 사진 등 포함
 - 국제행사나 세미나, 축제관련 참석 보고서는 행사의 세부적인 진행 사항 등 작성
 - 출장 시 직접 체험한 사항 위주로 작성(의원별 개인소감, 정책제언 포함)
 - 도정 활용 여부 등 작성
 - 방문결과 및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등 구체적 서술
 -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보고서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상30, 좌·우 20, 하15)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 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에 목차, 셋째 장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000제도관련 00 방문)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 1. 출장목적 :
- 2. 출장기간 및 출장지역 :
- 3. 출장단 : 소속위원회, 성명
- 4. 출장일정
- 5. 예산집행금액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예산집행금액 명시(항공료, 보험, 경비, 숙박비 등)
-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보고서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보고서

성 명 (상임위)	(서명)
--------------	------

<주요 작성내용>

- 출장과 관련한 본인 관심분야
-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와의 연계 계획
 - 예시)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과 연계
- 계획 실현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 공무국외출장과 기관방문을 통해 모범사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주요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기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3.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4.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1호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
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
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출연금 등”이란 출연금과 전출금을 말한다.
5. “정산”이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등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정산하
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정산검사 및 정산결과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3.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2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상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상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여 경상남도정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상남도지사(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3호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군별 물막이관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4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이하 “산업재해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마련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예방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포상
2.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산업안전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산업안전대상 수여에 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예방등의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4.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도내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자금 등 지원
3.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①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변경
2. 산업재해예방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
3.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수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5호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를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내용”을 “내용과 그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를 “이사장은 재단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본금, 채무변동 등 재무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6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자문하기”를 “심의하거나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자문한다”를 “사항에 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심의·자문할”을 “심의하거나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으로, “심의·자문한다”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의·자문한”을 “대행한”으로, “심의·자문한”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를 “인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거부하여”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부터”를 “향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5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87호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시·군 관광자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협력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전·연구 및 분야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지원 방안
5.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경상남도민과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지역연계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지역연계관광 홍보
5.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계관광센터)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연계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센터 기능을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출연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시·군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 림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제정 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의 자격 현행화 및 예비 명부 제한적 구성 조항 삭제

3. 주요내용

구 분 (사유)	내 용
제5조(위원의 자격)3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로 현행화
제5조(위원의 자격)5 ☞ 사립학교 교직원 범위의 명확화에 따른 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1항에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교육청에서 매년 재정결합보조금, 인건비 등을 교부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우리교육청 소속으로 넓게 해석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평가위원 구성 취지상 공,사립 교직원 모두 구성 자격이 없으며, 직장연고·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사립학교 관련분야 교직원을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개정
제5조(위원의 자격)6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공사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조경,건축,디자인 등 전문가(해당 공사계약에 한함) 삭제
제6조(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 선정) ☞ 예비 평가위원 제한적 구성 개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추가로 추천하게 할 수 있는 제한적 구성 관련 조항(20% 이내)을 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0.(화)까지 경상남도교육감(참조: 재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1430
- 주소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감 (참조 : 재정과)
- 전화 : 055-268-1472(FAX : 055-268-1489)
- E-mail: goodjob1489@korea.kr

- 붙임** 1.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경상남도 교육규칙 제 호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3.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제6조제3항 중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를 “대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12. 교규724></p> <p>1. 2. (생 략)</p> <p>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3.9.12. 교규724></p> <p>4. (생 략)</p> <p>5. 사립학교 관련분야 교직원 <개정 2013.9.12. 교규724></p> <p>6. 조경, 건축, 디자인 등 전문가(해당 공사계약에 한함) <개정 2013.9.12. 교규724></p> <p>7. 8. (생 략)</p> <p>제6조(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 선정) ①·② (생 략)</p> <p>③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u>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u> 추가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교규724></p>	<p>제5조(위원의 자격)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p> <p>4. (현행과 같음)</p> <p>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p> <p><삭 제></p> <p>6. 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제6조(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대비하여</u> ----- ----- -----</p>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자 :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3-231호**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제정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신설

3. 주요 내용

- 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 제한입찰 대상 ☞ 23. 5. 기준 시행규칙 제24조 물품 제조·구매·용역 관련 계약의 경우 “5억원”
- 나. 적용 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다. 위원 구성: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
- 라. 위원 자격: 평가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성이 있는 자로 수시 위촉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0.(화)까지 경상남도교육감(참조: 재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1430
- 주소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감 (참조 : 재정과)
- 전화 : 055-268-1472(FAX : 055-268-1489)
- E-mail: goodjob1489@korea.kr

- 붙임** 1.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경상남도 교육규칙 제 호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한하며,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해당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학생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제안서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 평가를 회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및 적격 통과점수는 사업부서의 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최종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③ 최종 평가점수 산출 결과 그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및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 7. 1. 입찰공고문부터 시행한다.

경 남 공 보

제2611호

2023. 5. 10.(수)

「경상남도교육청 2단계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자 :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